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직위군에 대한 인사가점을 신설·확대
- 연간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 단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비율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 성적평가 70점, 경력평정 30점
 -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문화를 지양하고, 우수성과자에 대한 승진 기회 보상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점수 상향 필요
- (개정안) 근무성적평가 배점을 70점 → 8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력평정 배점을 30점 → 15점으로 하향조정
 - 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요소별 배점 조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뒤로 조정

☞ **【근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점점 등)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전문직위군 가점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직위분류제 시행('14.7.1) 이후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와 '개별 전문직위'로 구분하고, 전보제한을 강화**

* 전문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재직을 유도

** 전문직위 전보제한 : (전문직위군) 신설 8년, (전문직위) 기존 3년 → 3~4년

- 기존 전문직위 가점은 38개월 근무시 만점(1점)에 도달하는 체계로, 8년 전보제한인 전문직위군 신설에 따라 가점체계를 변경할 필요

- **(개정안)**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 대한 가점을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

③ 일반승진 시 특별요건평가 반영비율 삭제

- **(현황 및 문제점)** 일반승진 심사 시 심사항목에 특별요건평가 점수를 30% 반영

* 일반승진 심사항목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점 + 특별요건평가점수 30점

- 일회성 특별요건평가가 승진심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중하여 성과 우수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

- **(개정안)** 특별요건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평가점수 반영비율 삭제

④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시간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승진을 위한 교육훈련 의무이수시간은 연간 100시간

* 일반승진 심사항목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점 + 특별요건평가점수 30점

- 실적채우기 식의 비효율적 교육관행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체계 확립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

☞ **【근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1(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정안)**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시간을 100 → 80시간으로 축소

5 특별승진 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인사관리 규정 상 특별승진 절차가 복잡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고 단순화 시킬 필요
- **(개정안)** 특별승진 절차를 알기 쉽게 명확하고 단순화

6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 규정 삭제

- **(현황 및 문제점)** 선발시험(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민주적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14.7.29)
- **(개정안)**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

7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정부조직개편('14.11.19)으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로 변경
- **(개정안)** 안전행정부(장관)를 인사혁신처(장)로 변경

3. 의견제출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481-4587, 팩스 042-472-3310)

「중기청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I. 총칙</p> <p>5. 시행일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훈령은 <u>2013년 1월 15일부터</u> 시행함. < 후단 신설 > - < 신설 > - < 신설 > 	<p>I. 총칙</p> <p>5.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2015년 0월 0일</u>----- ----.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2016년 상반기</u> 근평시부터 시행함. - ‘V. 승진’ - ‘3. 일반승진’ - ‘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VI. 평가’ - ‘6. 승진후보자명부’ -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p>V. 승진</p> <p>3. 일반승진</p> <p>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의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u>근무성적평가 70점, 경력평정 30점, 가점평정 5점</u>으로 함 <p>라. 심사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심사항목은 승진후보자명부 및 특별요건평가 등 <u>2개 항목</u>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u>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점, 특별요건평가점수 30점</u>으로 함. [시행 2013. 1. 1] -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u>승진후보자 명부 순으로 작성하고 특별요건 평</u> 	<p>V. 승진</p> <p>3.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근무성적평가 85점, 경력평정 15점,</u> -----. <p>라.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2개 항목</u>으로 하되,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u>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작성하여야 함.</u> - 특별요건 평가점수는 <u>승진 최소요건</u>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p><u>가점수를 반영한 종합순위는 별도로 작성하여 승진심사 시 활용 되도록 하여야 함.</u></p> <p>4. 특별승진</p> <p>다. 심사항목 및 추진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승진은 공지, 후보자추천, <u>서면 심사</u>, 특별요건평가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u>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임용을 추진하고자 한 때에는 자격 요건, 추천 기준, 선발 인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u> ○ 특별승진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차장, 본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u>함</u>. <u>추천방법은 추천권자가 사전에 공지된 추천 기준, 직무능력 등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양식에 따라서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권자 추천에서 제외된 공무원 중 본인이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u> <p>※ 중앙제안에 채택(창안등급 동상 이상)된 직원의 경우 <u>소속기관별 추천규모와 별도로 추천할 수 있음.</u> (단, 채택당시 해당직급에만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u>[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특수</u> 	<p>4.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공적 평가</u> ----- ----- -----. ○ <u>인사담당부서장은 자격 요건, 추천 기준, 선발 인원 등 특별 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u> ○ ----- ----- <u>하며,</u> <u>추천권자는 사전에 공지된 추천 기준, 직무능력 등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양식에 따라서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u> <p>※ ----- ----- <u>추천권자에 의한 추천과 별도로 인사담당 부서장이 특별승진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u>-----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현 행	개 정
<p>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u>공적평가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적내용은 중소기업청(학교 근무 중 공적을 포함한다) 또는 직무파견, 교육 훈련 근무기간 중 공적으로 하며, 공적기간은 공적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함. ○ <u>특별승진후보자의 특수공적 평가를 위해서 “서면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획 능력 등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u> - <u>서면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해 특별요건평가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각 심사(시험)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u> ○ <u>특별승진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심사는 특수공적의 사실 여부, 중요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후보자를 선별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 위원회에 추천함.</u> - <u>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 및 감사담당부서 등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후보자 공적의 사실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할 수 있음.</u> 	<p>----- ----- <u>제출된 공적조서를 공적평가 실시 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u>기타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승진임용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u>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 <u>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하되, 특별요건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승진의 특별요건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u> ○ 서면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u>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면접시험위원회 위원은 중소기업청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면접시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u> ○ <u>특별승진의 평가항목은 특별요건평가 및 면접평가의 2개 항목으로 하고, 각 평가항목의 배점은 특별요건평가 50점, 면접평가 50점으로 함. 단,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100점으로 함.</u> 	
<p>6. 과장직위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과장직위(4급 보직과장에 한함) 부여는 <u>안전행정부</u>에서 실시하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에서 만점의 5할(2.5점)이상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타부처로부터 전입, 복직, 파견복귀 등으로 역량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간이 없거나 인력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6.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인사혁신처</u> ----- ----- ----- ----- ----- ----- ----- -----.
<p>VI. 평가</p> <p>5. 가점평정</p>	<p>VI. 평가</p> <p>5. (현행과 같음)</p>

현 행

다. 가점 선정기준

구분	가점항목	최대 가점	부여 기준
2	특정직위 근무경력	1점	· 근무기간 : 0.035점/월(1년 초과 근무시)

-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특정 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 1월에 0.035점을 곱하여 최대 **1점**을 부여함.

- (생략)

※ 특정직위 : 감사부서,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타부처 파견, **전문직위**

6. 승진후보자명부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 점수는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 70%**, **경력평정 30%**를 반영함.

근무성적평가 (70점)	+	경력평정 (30점)	+	가점평정 (5점)
-----------------	---	---------------	---	--------------

VII. 교육훈련

5.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은 **100시간**으로 하되 직렬별·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부처지정 학습의 이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IX.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 위원회 운영

개 정

다. (현행과 같음)

구분	가점항목	최대 가점	부여 기준
2	특정직위 근무경력	2점	· 근무기간 : 0.035점/월(1년 초과근무시)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 기타	1점	

- -----

----- **2점**-----.

- (현행과 같음)

※ -----
----- **전문직위**
(가점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전문관 선발일부터 적용)

6.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
----- **근무성적평가 85%**, **경력평정 15%**-----.

근무성적평가 (85점)	+	경력평정 (15점)	+	가점평정 (5점)
-----------------	---	---------------	---	--------------

VII. 교육훈련

5. (현행과 같음)

- ----- **80시간**

-----.

IX.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 위원회 운영

